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

2022. 8. 19. (금) 기준

*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사용)

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확인 철저, 검역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
-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
-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 유지

구 분	현 행	변 경	시행
① 입국 전 검사 조정 (PCR·RAT 병행)	48시간 이내 PCR검사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5.23일
② 입국 후 검사 강화 (1일 내 PCR검사)	입국 3일 이내 PCR	입국 1일 이내 PCR	7.25일

출처: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69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2. 8. 3.(수)>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ntigen, AG)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22.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 확인서 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
- ※ 항만을 통한 입국은 출발일 0시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유지 (다만, 출발일 0시 24시간 이내 검사·발급한 항원검사도 인정)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 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 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 되는지?

-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5.23일~)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등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9. 경유하여 공항 입국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 예시) A국가(5.23일 출발) → B국가(5.23일 도착, 5.24일 출발) → 우리나라(5.24일 도착)

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5.24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5.23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10.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1.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우 승객(환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2.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3.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호('22.6.22.) 반영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 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14.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 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등이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소지 19번 답변 서식참고)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등 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5.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서류소지자에 한함, 19번 답변 서식참고)

17.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8.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한편,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구 분	확진일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4. 13. (‘출발일’ -40일)	5. 23.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5. 13. (‘출발일’ -10일)	5. 23.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4. 12. (‘출발일’ -41일)	5. 23.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5. 14. (‘출발일’ -9일)	5. 23. (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 (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19. 국내 확진 후 완치된 장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①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및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도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
 - (외국인 등록증 등 서식) 아래 표 참고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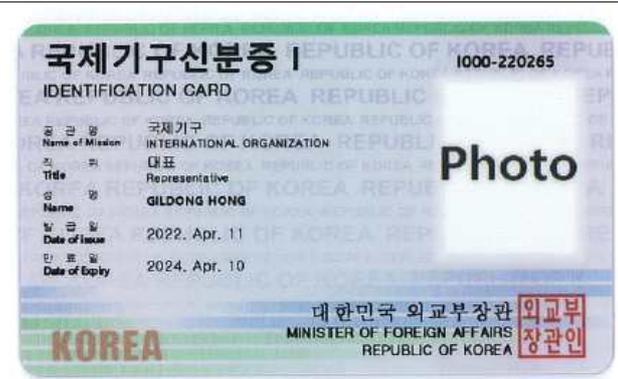
주한 공관원 신분증(외교관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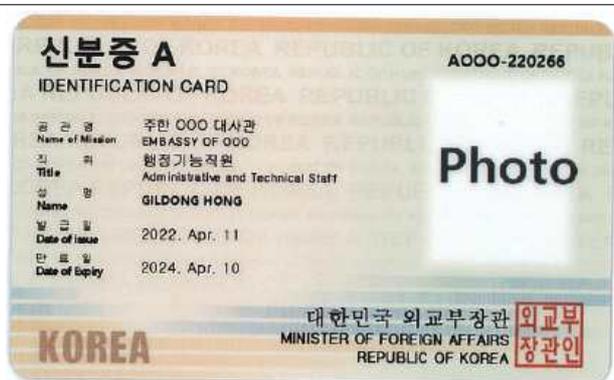
주한 공관원 신분증(영사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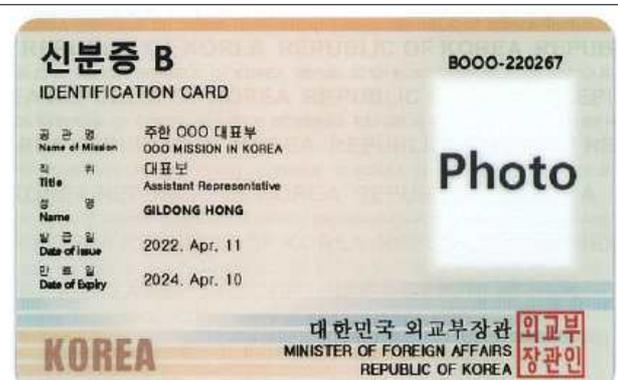
주한 공관원 신분증(국제기구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A)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B)



주한미군 신분증

여권 내 미군 관계자(A3 사증) 표식

